

## 國內事件

### 實用新案登錄無効

〈大法院 第2部 判決〉

裁判長: 大法院 判事	이	영	섭		
關與判事	"	민	분	기	
"	"	김	운	행	
"	"	김	용	철	

1. 事件: 76후 6 實用新案登錄無効
2. 審判請求人(被上告人): 정 순 달
3. 被審判請求人(上告人): 안 흥 찬  
 代理人 辨理士 김 익 신
4. 原審決: 特許局 1976. 1. 29 1975 抗告審判 221號 審決
5. 主 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6. 理 由: 審判請求人訴訟代理人的 上告理由를 第1點에서 본다.

原審이 舉示한 證據와 그 實施理由에 비추어 볼 때 심판청구인은 本件 實用新案과 同種의 亞鉛板을 販賣하였거니와 이를 판매한 者로서 本件 실용신안의 權利分析으로 因하여 權利者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對抗을 받을 念慮가 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이 舊 實用新案法第24條 2項 所定の 利害關係人으로서 本件 無効審判을 청구할수 있는 適格者라고 認定한 原審判斷은 正當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訴論과 같은 審理未盡이나 判斷遊脫의 違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다음 같은 上告理由 第2點을 본다. 구실용신안법제28조에 의하여 準用되는 舊特許法第113條 第3項, 第5項의 규정은 審理遲延을 避하기 위한 文示的規定에 불과하다고 解釋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1976. 1. 28 이 事件審理를 終決하고 그 다음

날에 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인 1976. 2. 4에 이르러 비로서 審理終決通知書를 審決書騰本과 함께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게 送達했다고 해서 本件 심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上告理由 第3點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惠澤證據들을 綜合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의 登錄出願(196 9. 7. 28) 전인 1965. 11. 8에 이미 頒布公示된 그 判示引用方式을 亞鉛板의 製作裝置와 이 사건 方式用亞鉛板의 제작장치 는 그 심금과 고무대판의 形成에 약간의 差異가 있을뿐 根本的인 形成과 技術思想, 構造및 作用效果는 同一 또는 類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論旨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歸着된다 하여 이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敗訴者의 부담으로 하고 關與法官의 一致된 의견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 国外事件

### 〈美 國〉

#### 1. 判 決

183 USPQ 172 Inre Johnston(CCPA~1974)

#### 2. 事件要旨

本件은 會計處理를 위한 記  
錄保存機시스템으로서 특히 銀  
行과 雇客間의 회계처리시스템  
의 發明에 대한 特許出願事件  
이다.

#### 3. 審査官의 拒絕査定理由

審査官은 본건이 디지털컴퓨  
터를 使用한 시스템의 발명이  
며 클레임 20~24가 明白하게  
定義되어 있지 않은 것과 公知  
의 시스템과도 分명한 定義上  
의 差異가 없는 見地에서 35U  
SC 112 및 103의 規定에 의해  
拒絕査定하였다.

#### 4. 審判部의 無特許性 審決

出願人은 이에 不服하여 審  
判請求한 바 審判部는 심사관  
의 拒絕理由에 대해서는 거의

言及된바 없이 클레임은 法定  
範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유(35USC11 2) 및 USP3, 343,  
133에서 自明하다는 이유(35  
USC 103)등의 거절이유에 의  
해 特許性이 없다고 審決하였  
다.

#### 5. CCPA의 判決

審判請求人은 CCPA에 提訴  
한 結果 CCPA는 심판부가 말  
하는 새 이유에 의거한 거절은  
어느 것도 이유가 없다고 審決  
을 破棄하였다. CCPA는 그 判  
決에서 클레임은 機械시스템의  
클레임이므로 법정범위에 드는  
것이며 더우기 會計處理를 위  
한 記錄保持機시스템이라고 정  
의되어 있으므로 資料處理機,

코드化信號, 混合比較處理機,  
入力出力裝置, 制御시스템, 메  
모리, 出力記錄製造裝置 등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으  
므로 클레임은 特定되어 있으  
며 더우기 USP 3, 343, 133의  
시스템과 본건시스템은 서로  
다르며 클레임이 넓다하여 본  
건시스템의 構成을 示唆하는  
것은 아니라고 說示하였다.

#### 6. 解 說

본건 판결에 관하여 裁判長  
은 본건클레임은 公知文獻에  
서 자명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35USC 103의 規定에 따라 거  
절해야 한다는 反對意見を 陳  
述하고 있으며 退任한 리치判  
事は 본건시스템은 법정범위에  
돌지 않으므로 35 USC 101의  
規定에 의해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즉 심판부의 審決이 支持하  
지는 않았으나 強한 반대의견  
이 있었음을 看過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료처리기 등의 시스  
템에 대한 특허성이 지지되는  
傾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日 本〉

#### 實用新案權侵害와 先使用權

(日本 大阪地法判決, 1977年 3月 11日, 1972年 第397號,  
1975年 第453號 併合事件)

1. 原 告 : X

2. 被 告 : Y, Y<sub>1</sub>

3. 判決主文 : 原告의 被告에 대한 請求를 모두 棄却한다. 訴訟  
費用은 원고의 負擔으로 한다.

#### 4. 提 訴

X는 1968年 10月12日 出願  
1952年 2月7日 登錄의 葉子  
製造裝置의 登錄實用新案權(以

下本件實用新案이라함)者이다.  
同考案은 上下를 開放한 葉子  
型 1과 通氣孔 2를 交互로

多數並設한 組立體 a와 受板  
3과를 同一間隔등 速度로 移行  
시키는 것, 또한 그 移行初의  
位置에서 물엿을 型 1內에 注入  
할 때에는 수판 3을 組立體의  
下面에 붙일 것, 또 型 1內의  
엿이 冷却硬化함에 따라 수판  
3을 型 1에서 떨어지도록 할것  
을 構成要件으로 하여 물엿을  
型 1內에 주입할 때에는 수판  
으로 型 1밀을 만들어 물엿이  
型으로부터 流出함을 防止한  
다. 엿이 굳을 때에는 밀을 빼어  
냉각고화를 促進시키는 作用効

## 判例教室

과가 있다.

X는 Y들의 (이)號裝置가 本件實用新案을 侵害한다 하여 禁止와 損害賠償을 請求하였으나 Y들은 先使用權이 있다하여 이에 抗辯한 것이 原告, 被告들의 主張要旨이다.

### 5. 判決要旨

① (이)호장치는 본건 실용신안의 技術의 範圍에 屬함에는 當事者間에 異論이 없다.

② 선사용의 항변에 대해 Y<sub>1</sub> (化學精機의 製造販賣業)은 1965년 초쯤 去來先인 訴外A로부터 X에 納品하기 위해 尙連續製造販賣裝置의 關係依賴를 받았다.

그러나 Y<sub>1</sub>의 技術部長들은 X의 會社工場을 見學한 다음 종래의 技術을 改良하여 (이)호의 基本構想을 하였고 그후 X의 立會下에 X들이 願하는 黃金色의 水分이 적은 錠을 鑄일수가 있게 되었다.

그후 Y<sub>1</sub>은 원레터에 따라 錠을 鑄이는 溫度, 時間, 빛의 變化, 充填機에 의해 成型器에

주입할 수 있는 온도의 限界, 成型器에 주입후의 冷却時間, 成型器背鐵을 拂는 시간등에 관한 資料를 X로부터 入手하여 Y<sub>1</sub>들의 指導下에 黃金糖連續製造裝置의 配置圖, 플트시트, 성형기, 성형기배철의 設計圖를 그해 6월에 충전기노즐 軀本體, 플랜저등 충전기 關係의 제조설계도를 각각 完成하였다.

그리하여 Y, Y<sub>1</sub>들의 訴外B에 대하여 餡劑成型部裝置를 포함한 黃金糖連續製造裝置 乙式을 製作하여 賣渡하기로 約定했다.

한편 X는 성형기와 그 배철의 製作을 소외 C와 D에 의뢰하였고 C, D는 이를 製作하여 X에 納品하였다.

그러나 위의 장치에 缺點이 보이므로 X의 從業員 X<sub>1</sub>과 Y<sub>1</sub>이 協議하여 改良하기 시작한바 1966년 3월 말쯤 이를 完成하였다.

한편 Y는 Y<sub>1</sub>들에 의해 1967년 7월 17일, 이 장치의 見樣

書를 받아 1968년 7월 20일 Y<sub>1</sub>로부터 대체성형부장치를 포함한 尙연속제조장치 1식을 제작 配達하기로 約定하였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Y<sub>1</sub>들은 1960년 6월 중순쯤에는 本건 高안을 포함한 장치에 대해 高안을 完成한 것으로 認知된다.

따라서 Y는 本건 實用신안 등록출원에 관계되는 高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高안을 한 Y<sub>1</sub>들을 개입시켜 1967년 7월 中순쯤 探知하여 本건 實用신안출원때에 이미 대체성형부장치의 사용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선사용권이 있다고 할만하다.

### 6. 解 說

이 判결에서는 성형기의 構造가 最終적으로 결정되게된 經過를 立證하는 資料가 分明치 않으며 원레터테스트에서 契約에 이르기까지의 時間을 正當化하는 資料도 볼수 없고 선사용권의 成立要件에도 疑問을 갖게 한다. ☹

## 알림

### 서울藥品 創立 31周年 記念

서울藥品工業株式會社(代表:朴判燮)는 7월 4日 創立 31돌을 맞아 記念式을 갖고 10年以上 勤續者 40名 營業實績優秀者 6名, 功勞退職者 5名 등을 表彰했다.

### 鮮京合織 創立 8周年 記念

鮮京合織株式會社(代表:崔鍾賢)는 지난 7월 1日 創立 8돌을 맞아 水原과 蔚山 두공장에서 각각 記念式

과 社內體育大會를 가졌다.

### 第一合織 創立 5周年 記念

第一合織株式會社(代表:李股澤)는 7월 1日 創立 5돌을 맞아 慶山工場에서 全任職員이 참석한 가운데 記念式과 社內體育大會를 가졌다.

### 코오롱 「코오롱20年史」發刊

株式會社 코오롱(代表:李東燦)은 지난 7월 「코오롱 20年史」를 發刊했다. 1957년부터 77년까지 20년

울안의 코오롱發展史를 담은 이 冊子는 創業期, 開花期, 中興期, 跳躍期의 4기로 나뉘어 編織했다.

### 泰和 烏山中·高校를 引受, 擴張

株式會社 泰和(代表:金學命)는 京畿道 烏山所在 烏山中·高等學校를 引受했다.

내년부터는 同校를 實業高等學校로 改編하고 專門學校까지 新設할 計劃이다.

× × ×